

『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11월 15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11월 21일

제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 농정과장 김 시 배

나. 제안이유

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
· 보전 ·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
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에
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 “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조례”로 함
- 농촌용수의 이용 · 배분 및 보전 · 관리에 관한사항
 - 농촌용수는 생활.농업.공업.환경오염방지 용수로 구분
 -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
- 농촌용수의 보전 · 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 · 조작에 관한사항
 - 용수구역 년1회 이상 조사
 - 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대장에 의거 년1회 이상 조사

-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
 - 농촌용수의 오염방지에 대한 필요대책 수립.시행 명시
 - 목적외 용수의 개발사용 제한
- 농촌용수의 운영·관리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
 - 시 위원회 및 용수구역별 위원회 설치
 - 위원회 구성위원수 및 위원 구성 근거 마련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(조례의 제정)
경상북도 고시 제 2000 - 22호(2000. 1.25)
농업용수구역고시(3개소 - 선장.선해.선산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·보전·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, 조례로 제정하여,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"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준칙"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
- 주요 내용으로는, 농촌용수의 이용·배분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, 보전·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·조작에 관한 사항,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, 위원회 설치운영 등, 본 조문 2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구미권의 용수구역을 선장.선해.선산으로 구분하고 "농촌용수구역 운영 관리위원회"를 설치 운영하여,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.배분 및 수질관리.보전 등을 기하는 내용으로서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